

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

의회운영위원회

# 심사보고서

2024. 9. 11.(수)



의회운영위원회

# 목 차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 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 4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539호
- 발 의 일: 2024년 8월 23일
- 발 의 자: 김보경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4년 8월 26일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(2024.9.6.)

## 2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연가전환 및 연가 가산, 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, 자녀 보육휴가 등을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(안 제13조)
- 경력직공무원·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일수 확대(안 제14조)
-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(안 제15조제1항, 제15조제4항)
- 치유휴가 및 자녀 보육휴가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9항, 제15조제10항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
안 제13조에는 시간외근무 시 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
- 안 제14조에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민간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가가산일수를 현재 2일에서 3일로 확대 하였습니다.
- 안 제15조(특별휴가)
  - 제1항, 경조사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
  - 제4항, 장기재직휴가 대상의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 확대하고, 의장이 대상 공무원에게 10일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
  - 제9항, 직장 내에서 성희롱, 성폭력, 폭언,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
  - 제10항,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양육을 돕고자 해당 자녀 1명을 둔 경우에는 연간 10일, 2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연간 15일의 범위에서 자녀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도움으로써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저출생시대에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과정

- 의안번호: 제2540호
- 발 의 일: 2024년 8월 23일
- 발 의 자: 이연숙 의원 등 4인
- 회부일자: 2024년 8월 26일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(2024.9.6.)

## 2. 제안사유

-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·운영 관련 조례 참조안 ('23.11.24.)을 반영하여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·운영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연구경비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9조)
- 연구경비 집행·제한과 연구활동 보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달성군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·운영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,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
  -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3명에서 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
  - 연구단체 존속기간을 등록 통지일부터 연구활동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, 그 활동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개정·신설함으로써 연구단체 존속기간과 연구활동기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절차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
- 안 제4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
  - 연구경비 지원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
  - '25.1.1.부터 연구단체 등록 서류를 매년 3월 31일(의원 임기 개시 연도는 8월 31일)까지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단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구성·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
- 안 제7조~제9조에는 심사위원회 기능을 연구경비 지원 등에 관한 심사로 축소하고, 심사결과 통보 대상 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행 운영 및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구, 서식 등을 개정하였습니다.

○ 안 제10조~제13조

- 연구활동 결과보고 대상을 의장으로 개정하였으며
- 연구단체 연구활동 경과 또는 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